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임금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서식상 임금 개념을 문언에 맞게 정정하고, 조사대상 근로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상의 ‘임금’ 개념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수’ 개념으로 정정 (안 별지 제5호서식)
- 나. 임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자에 중도 입사자, 단시간 근로자, 장기 휴직자 등을 포함 시 과소 측정된 임금 현황이 제출됨에 따라 임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안 별지 제5호서식)
-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을 4분위로 제출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고소득을 4분위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 서식은 4분위가

최저소득을 지칭하고 있어 혼란 소지가 있으므로 분위개념 정정 (안 별
지 제5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제1쪽)

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 (본사)	사업체명(법인명)			사업체 형태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1,000명 미만 사업 ☐ 1,000명 이상 사업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총 상시근로자 수	명 (여성)	명	관리자	명 (여성)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	--

참고사항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제2쪽을 작성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장별 현황												
사업장 (1)	명 칭											
	소 재 지		우편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이메일주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명 (여성)		명 관리자		명 (여성)		명			
사업장 (2)	명 칭											
	소 재 지		우편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이메일주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명 (여성)		명 관리자		명 (여성)		명			
사업장 (3)	명 칭											
	소 재 지		우편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이메일주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명 (여성)		명 관리자		명 (여성)		명			
사업장 (4)	명 칭											
	소 재 지		우편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이메일주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명 (여성)		명 관리자		명 (여성)		명			
사업장 (5)	명 칭											
	소 재 지		우편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이메일주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업태		종목	(주 생산품)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명 (여성)		명 관리자		명 (여성)		명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년도)

1. 관리번호 :
 2. 사업장 등록번호:
 3. 사업장 명칭:
 4. 산업분류:

<남녀 근로자 인원 현황>

직종별 직급별	계		Ⅰ 직급		Ⅱ 직급		Ⅲ 직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전 직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관리자 직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그 밖의 직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구분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1인당 평균 보수총액	원		원	
인원	명		명	
근속기간	년 월		년 월	

구분	1분위(25%)		2분위(25~50%)		3분위(50~75%)		4분위(75~100%)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원인분석
(선택 기재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 현황은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료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산업분류는 최종 산출물, 완제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된 내용에 따라서 다음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산업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가.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산업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나. 장소가 분리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다.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의 기준에 따르되, 제조업 및 운수업은 중분류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직급은 Ⅰ 직급(임원급 이상 관리자), Ⅱ 직급(과장급 이상 임원급 미만 관리자), Ⅲ 직급(비관리자)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원을 작성합니다.
4. 직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직종과 그 밖의 직종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원을 작성합니다.
5. 「남녀 근로자 인원 현황」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서 해당 연도 3월 3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에서 근로자란 위 '5호'에서 기재한 자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유형의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 ㉠ 1개월 이상 휴직자(예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병가 등)
 - ㉡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자(예시: 단시간 근로자 등)
 - ㉢ 중도 입사자(예시: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
7. 임금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
8. 근속기간이란 임금 작성 대상 인원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평균 근속기간을 말합니다.
9.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4분위별로 작성합니다. 1분위는 보수총액 하위 25%, 2분위는 하위 25% 초과 50%까지, 3분위는 50% 초과 75%까지, 4분위는 나머지의 성별 비율을 작성합니다.
10.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원인분석란에는 성별임금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성과, 직군, 근속 등 사업장 자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11. 사업장별로 산업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별지에 작성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6